

문서번호	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95
결재일자	2016.6.1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아동청소년담당관	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	부구청장	
강길원	황지연	민지선	06/16 김병환	
협조자				

- 아동친화도시 정책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-
아동영향평가 등 실시 계획



2016. 6

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

- 아동친화도시 정책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-
아동영향평가 등 실시 계획

성북구에서 추진하는 정책 · 사업 등에 대해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아동 권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여 아동친화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

I 추진 근거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(2014.05.29.제정)

II 추진 배경

- 안정적인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 - 아동친화도시 관련사업을 안정화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발굴하기 위한 기반 구축
- 아동정책의 효과성 제고
 -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추진 시 아동의 특성과 욕구, 생활환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정책의 효과성 제고
 - 2016년 아동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23%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아동 관련 사업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, 효과 등의 검토 필요
- 아동의 사회적 배제 방지
 - 타 정책의제 와 관련 아동문제의 우선순위 하락 및 아동집단의 상대적 주변화 방지
- 아동정책의 조정기능 및 정보관리능력 향상

III 대상 및 내용

□ 아동영향평가 대상

-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·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
- 해당 연도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

□ 평가 주요내용

- 아동인권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**사전평가**
 -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·평가
 - 사안이 중대하여 전문적 평가가 필요하거나 아동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자문, 청소년 구정참여단 등 참여기구의 검토 가능
- 정책, 프로그램, 사업의 시행 이후 아동에 대한 영향을 입증하는 **사후평가**
 - 사전평가 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

IV 추진 경과

-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실시
 - 시행기간 : 2013. 10. 21 ~ 2014. 2. 10
 - 수행기관 :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과학 연구소
 - 용역내용
 - 해외 영향평가 사례 연구
 - 아동영향평가 접근법, 기준과 대상, 점검표 등 방법 제시
 - 어린이·청소년 모니터링 참여방안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
 - 입법예고 : 2014. 4. 1 ~ 4. 21
 -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 : 2014. 4. 23
 - 성북구의회 심의·의결 : 2014. 5. 1 ~ 5. 9
 - 조례공포 : 2014. 5. 29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: 2014. 11. 17
-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: 2015. 2. 6
- 사전 아동영향 평가 실시 : 2015. 2 ~ 4
 - 평가방법 : 아동영향평가 점검표에 의거 평가
 - 평가실시 : 사업 부서
 - 평가결과 검토 : 총괄 부서 (교육청소년과)
 - 평가대상 : 아동관련 사업 및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·규칙의 제·개정
 - 2015.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 42개 사업선정
- 2015년도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: 2015. 6
 - 대상사업 : 2015년 세출예산서(일반회계)상의 113개 아동관련 세부사업
 - 예산규모 : 총 118,212백만원 (일반회계 대비 25.72%)
 - ※ 2014년도부터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중
- 2015년도 아동영향평가 실시 : 조례 및 시행규칙 제·개정 12건

V 추진 목표

목 표	아동친화도시 정착과 아동권리 증진		
방 향	1. 행정체계 내 아동권리 인식 정착	2.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정책의 효과성 제고	3. 아동의 사회 참여 기반 확대 <i>※ 사업별 계획 수립</i>
실 행 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동영향평가 시행 - 아동권리 인식 확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운영 -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권리지킴이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소년 구정참여단 활동 - 어린이·청소년의회 운영 - 아동청소년주민주의위원회 운영 - 아동·청소년 총회 등

VI 세부 추진계획

1. 행정체계 내 아동권리 인식 정착

1-1 아동영향평가 시행

□ 사업개요

- 법령, 계획, 사업 등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, 완료단계까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과 차별적 분배를 파악하여 아동의 권리를 고려한 정책 등이 되도록 함

※ 영향평가에서 고려하는 아동의 연령은 아동복지법,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출생 ~ 18세 미만까지로 봄

□ 현 황

-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대상(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8조)

- 조례 및 규칙 제·개정 현황

(기간 : 2010. 7 ~ 2015. 12)

구 분	조례		규칙	
	제정	개정	제정	개정
총 계	78	127	20	51
276	78	127	20	51
42	아동 관련 조례 : 39		아동 관련 규칙 : 3	

※ 동일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중복된 숫자임

- 2016년도 아동친화예산 현황

구분	참여부서/세부사업 수	예산액 (단위: 백만원)	전년도대비 예산증감율	영향평가 중점사업 수
생존권	8개부서/ 27개 사업	16,042	증1.6%	27개 사업
보호권	11개부서/ 28개 사업	4,659	증10%	28개 사업
발달권	8개부서/ 56개 사업	97,993	감0.8%	56개 사업
참여권	4개부서/ 7개 사업	355	증141.5%	7개 사업
계	18개 부서/ 118개 사업	119,048	증0.7%	118개 사업

※ 2015년도 아동친화예산 대상사업 113개 / 예산액 118,203백만원

□ 실시방법

① 조례 및 규칙의 제·개정

○ 주요내용

- 아동과 관련이 있는 조례 및 규칙의 제정·개정 시 조문 내용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검토

○ 대 상 : 조례 및 규칙의 내용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

- 현행 성북구의 제정된 조례·규칙 중 41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, 관련이 있어 개정 시 아동영향평가 대상이 됨

※ 기 제정된 아동영향평가 대상 조례의 경우 붙임4 참조

○ 실시시기 : 입법예고 기간(조례규칙 심의회 전 완료)

○ 시행방법

- ① 담당부서에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(붙임2)를 조례 또는 규칙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가진단 실시
- ② 총괄부서에서 검토 후 권고 또는 원안 동의 등의 의견 제시

② 세출예산 단위(세부)사업

○ 주요내용

-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아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부사업의 내용, 예산의 분배 등에 대해 검토

○ 대 상 : 2016년도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118개 사업

○ 실시시기 : 2016. 6월

○ 시행방법

- ① 담당부서에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와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자가진단 실시
- ② 총괄부서에서 검토 후 권고 또는 원안 동의 등의 의견 제시
- ③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2016년도 아동친화예산 자료 제출

③ 사전 아동영향평가

○ 주요내용

-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조례·규칙,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영향평가 사전실시 함
- 사안이 중대하여 전문적 평가가 필요하거나 아동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자문, 어린이·청소년의회 등 아동참여기구의 의견을 받음

○ 대 상 : 조례 및 규칙, 세출예산 단위(세부)사업

○ 실시시기

- 조례 및 규칙 : 조례·규칙 심의회 전
- 세출예산 사업 : 대상의 계획 확정 전

○ 시행방법

- ① 담당부서의 아동영향평가 점검표에 의거하여 자가진단 실시
- ② 총괄부서에서 검토 후 권고 또는 원안 동의 등의 의견 제시
- ③ 평가 대상 세출예산 사업의 경우 시행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거나 사전평가만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후영향평가 실시

④ 사후 아동영향평가

○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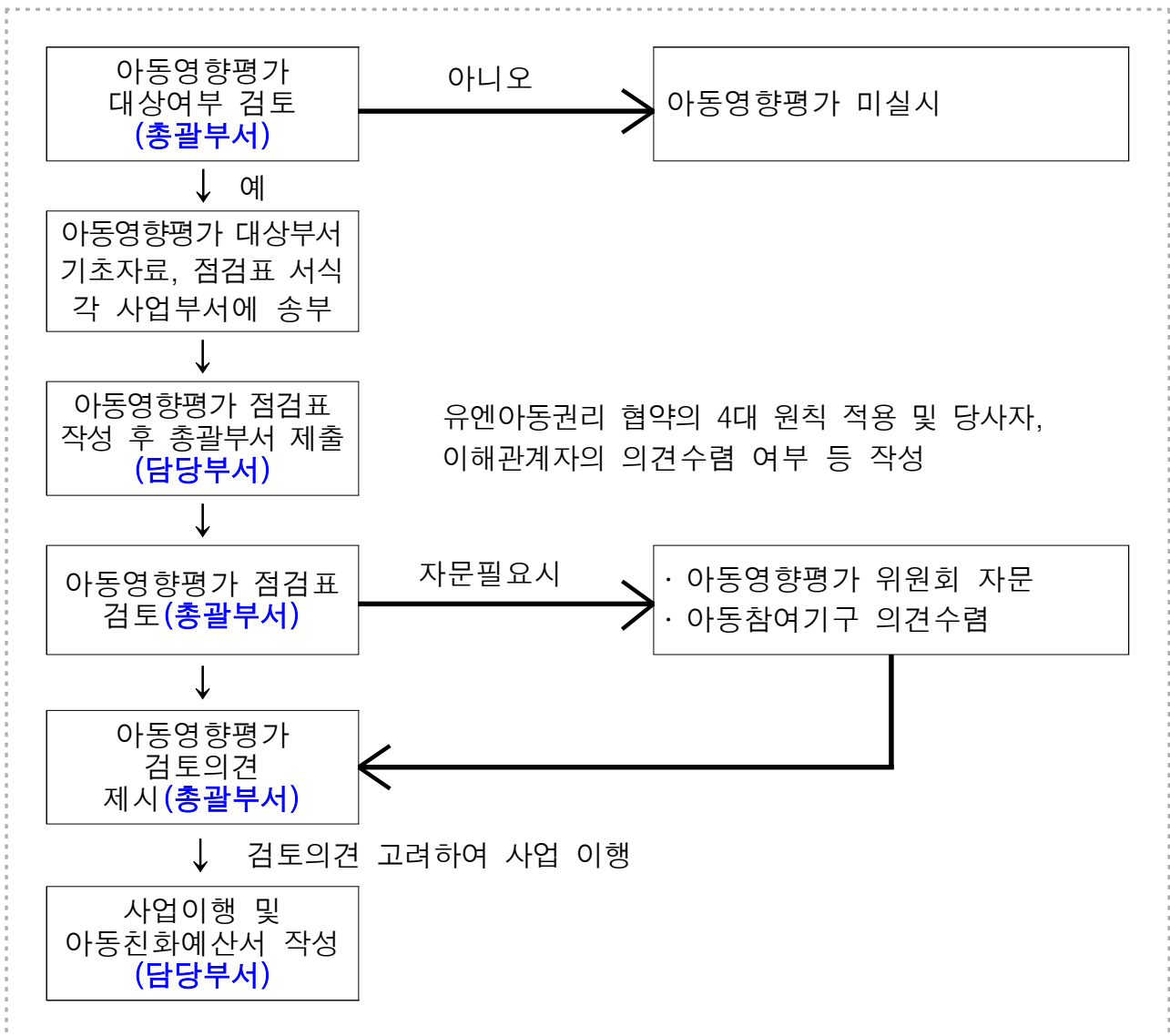
- 사전 아동영향평가 실시 사업 중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아동영향평가 총괄부서에서 검토한 사업을 대상으로 함

○ 실시시기 : 세출예산 단위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사업 종료 후

○ 시행방법

- ① 계획 등의 확정 전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와 사업실적, 시행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가
- ② 총괄부서에서 검토 후 권고 등의 의견 제시

※ 실시 절차



□ 아동영향평가의 단계별 추진계획과 중점과제

시 기	2015년 (도입기)	2016년 (발전기)	2017년 (안정기)
사업 추진일정	· 사전아동영향평가의 안정화	· 사전아동영향평가 확대 · 사후아동영향평가 도입	· 아동영향평가체계 안정화
중점 과제	· 아동영향평가 기본계획서 작성 · 성북구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아동영향평가 심의, 자문 · 아동권리지킴이 구성 및 활동	· 아동권리지킴이 활동 전개 ·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모델 체계적 정리	·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모델 보급

□ 추진일정

구 분(2016년)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조례·규칙 제정, 개정				계획수립								
	아동영향평가 시행 (제·개정 조례, 규칙 상시 사전 아동영향평가)											
세출예산 단위(세부)사업				계획수립								
					아동영향평가 시행(사전)						아동영향평가 시행(사후)	
아동친화예산서 작성					예산서 작성							

1. 행정체계 내 아동권리 인식 정착

1-2 아동권리 인식 확산

□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

○ 주민, 시설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

- 주요내용

- 아동의 권리에 대한 주민,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 등의 인식 확산 및 홍보를 위해 연 1회 실시
- 아동권리 교육과정 또는 주민특강 방식으로 구성하여 아동권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강사 섭외

- 기대효과

- 아동인권,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, 소양을 넓힘으로써 향후 아동권리 지킴이로서 활동가 양성 기대

○ 아동참여기구 아동권리 교육

- 주요내용

- 2016. 성북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및 청소년구정참여단 구성 후 아동대상으로 연1회 아동권리 교육

- 기대효과

-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의 권리 존중과 증진, 그리고 다양한 의회, 모니터링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○ 성북구의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

- 주요내용

-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 이론강의 및 아동폭력 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해 강의

- 기대효과

- 아동의 권리 및 안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자원 창출 기대

□ 아동 권리에 대한 내부이해 증진

○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

- 주요내용

- 아동의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아동영향평가, 아동친화예산서 등 아동친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연1회 아동권리 교육 실시
- 유엔아동권리협약, 아동영향평가의 개념 등 강의식 교육진행

- 시행방법 : 전 직원 집합교육

□ 아동친화예산서 제작

○ 주요내용

- 2016년도 아동영향평가 대상인 세출예산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예산규모, 수혜자, 사업내용, 연도별 예산 변동 추이 등의 내용과 함께 아동관련 사업 예산의 사용, 배분 현황 등을 파악
-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아동친화 사업의 분류, 아동권리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

○ 시행시기 : 2016. 6월 ~ 7월 중

- 세출예산 세부사업 아동영향평가 후 아동친화예산서 작성

○ 발간부수 : 100부

2.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정책의 효과성 제고

2-1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운영

운영시기 : 정기회 연1회(필요시 임시회 개최)

구성인원 : 총 9명

운영내용

- 2016년 조례, 규칙 제·개정, 세출예산 단위(세부)사업 등에 대한 사전 아동영향평가 결과 심의·자문
- 2016년 사후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심의
- 2017년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전 심의·자문

2.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정책의 효과성 제고

2-2 아동권리 지킴이 활동 (아동권리 모니터링)

추진목적

-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,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동, 주민, 전문가 등이 모니터링 참여

구성개요

- 시기 : 2016년도 하반기
- 대상 및 규모 : 관련 지역주민(성인) 10 ~ 15명
- 구성방법 : 공개모집

활동내용

- 모니터링 필요 사업의 시행 시(아동 관련 문화행사, 아동·청소년 관련 시설 등) 아동권리 지킴이(성인, 전문가, 어린이·청소년 등)를 구성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
- 국제아동인권센터,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아동권리 옹호기관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교육 시행
- 아동·청소년 구의회를 활용한 아동·청소년 모니터링 실시

2015년 운영실적

- 2015년 어린이의회 내 위원회를 5개 구성(교육, 문화, 복지, 인권, 특별)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
-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 진행

총 인원	성 별		구 분	
	남	여	5학년	6학년
36	14	22	2	34

- 구성 및 운영기간 : 2015. 3. 19 ~ 12. 31
- 운영내용
 - 아동·청소년 안전토론회 참여 : 2015. 4. 16
 - 어린이의회 발대식 : 2015. 5. 15
 - 어린이의회 오리엔테이션 및 1차 임시회의 : 2015. 8. 8
 - 어린이의회 위원회별 현장 모니터링 및 토론회 : 2015. 8. 22
 - 어린이의회 위원 아동권리교육 : 2015. 8. 29
 - 2015.어린이의회 본회의 개최 : 2015. 9. 17
- ⇒ 어린이의회 위원회별 총 5개의 안건 상정, 모두 가결

Ⅶ 행정 사항

-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 자가진단 실시 : 해당 사업부서
 - ‘2016년도 세출예산 단위(세부)사업’ 중 118개 단위사업을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
 - 118개 단위사업 시행부서(붙임1)는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점검표, 아동영향평가 시행 관련 사업부서 의견서(붙임3) 제출
 - 추진기간
 - 사업부서 아동영향평가 실시: ~ 2016. 6. 22(수)
 - 평가결과 총괄부서 검토: ~ 2016. 6. 30(목)

아동친화예산서 작성 : 해당 사업부서

- ‘2016년도 세출예산 단위(세부)사업’ 중 118개 단위사업을 아동친화예산서 대상사업으로 선정
- 118개 단위사업 시행부서 (붙임1)는 아동친화예산서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아동친화예산서(붙임5) 제출
- 추진기간
 - 사업부서 예산서 작성 : ~ 2016. 6. 22(수)
 - 총괄부서(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) 예산서 수합 및 발간 : 2016. 7월 중

아동영향평가 점검표 및 아동친화예산서에 대한 총괄부서 검토 :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

- 붙임 1. 사전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친화예산서 대상 사업목록 1부.
2. 아동영향평가 대상 조례 및 규칙 목록 1부
 3. 아동영향평가 사전·사후 점검표 서식(담당부서용) 1부
 4. 아동영향평가 사전·사후 점검표 서식(총괄부서용) 1부
 5. 아동친화예산서 작성서식(예) 1부. 끝.